

「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남진삼 의원
- 제안일자 : 2023. 10. 30.
- 회부일자 : 2023. 11. 7.

2. 제안이유

- 평창군 예비군들의 훈련장 이동을 위해 필요한 운행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의 이동권을 용이하게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용어 정의(안 제2조)
 - 제8087부대 만종예비군과학화훈련장을 특정하여 ‘훈련장’ 으로 정함.
- 예비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(안 제3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, 동법 시행령 제32조와 국방부 부령인 「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5조에서 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및 퇴소에 관한 교통 편의를 보장하여 예비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)에서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,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정함.
- ‘예비군 수송 지원’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, 이에 의거하여 관련 사업이 기 시행되고 있음.
이에 따라 유사 중복되는 내용을 별도 조례로 제정한다는 지적이 초래될 수 있어 제정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논의해 볼 여지도 있다 생각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국가 안보와 군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우리 군 예비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여 입법의 취지가 인정되고,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위배되는 사항도 없으므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 2022년 예비군 육성사업 정산내역

□ 세부 집행내역

(단위: 원)

구분	사업명	예산액	집행액	잔액
	합계	35,966,000	35,966,000	-
예비군 교육훈련	소계(3)	15,350,000	15,350,000	-
	1 병력 수송 임차료	8,850,000	8,850,000	-
	2 심폐소생술 마네킹	3,500,000	3,500,000	-
	3 연습용 AED 구매	3,000,000	3,000,000	-
만종 훈련대 지원	소계(13)	20,616,000	20,616,000	-
	4 훈련장 주변 환경개선	3,500,000	3,500,000	-
	5 훈련장 정비비	1,163,000	1,163,000	-
	6 훈련장 관제용 CCTV 선로 추가 설치	1,000,000	1,000,000	-
	7 예비군 식당 환경개선	2,500,000	2,500,000	-
	8 예비군 샤워장 정비	103,900	103,900	-
	9 편의시설 확충	2,100,000	2,100,000	-
	10 예비군 식당 공기제균기	2,124,000	2,124,000	-
	11 일반우의 구매	376,000	376,000	-
	12 냉난방기 구매	4,900,000	4,900,000	-
	13 핸드토키 구매	2,000,000	2,000,000	-
	14 컨테이너	63,100	63,100	-
	15 TRS 사용료	286,000	286,000	-
	16 방역 소독비	500,000	500,000	-